

청주교육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규정

제정 2006. 3. 17 규칙 제1153호
1차 개정 2020. 5. 11. 규칙 제1526호
2차 개정 2025. 5. 21. 규칙 제1664호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학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상담센터 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5.5.21.>

제2조 (조직) ① 센터에는 전담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5.11.>

② 센터에는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학생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5.11.>

제3조 (기능 및 활동) 센터는 우리대학 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, 사회인으로의 성장·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25.5.21.>

1. 개인상담

2.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

3. 집단상담 등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

4. 학생상담활동 관련 조사 및 연구활동

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련된 업무

제4조 (위원회) 센터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·운영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 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전담교수를 포함한 우리대학 전임교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전담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생처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0.5.11.>

② 전담교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.

③ 간사는 센터의 업무 담당자로 하며 회의록 작성, 행정사항 집행, 회의내용 보고 등을 한다.<개정 2020.5.11.><개정 2025.5.21.>

제6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25.5.21.>

1. 학생상담활동 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삭제

3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 (회의)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한다.

단, 가부동수 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(2006. 3. 17 규칙 제1153호)

제1조 이 규정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5. 11. 규칙 제1526호)

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 5. 21. 규칙 제1664호)

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